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2. 11. 9.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안 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21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2년 10월 26일
- 다. 상정 일자 : 제1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2년 11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재무과장 황경조)

가. 제안 이유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물품관리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부산직할시 조례 제2931호)

나. 주요 골자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개정에 따른 부산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 내용중 일부
개정

0. 제10조제1항의 관서당 물품을 물품으로
0. 제10조제3항의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출납원
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0. 제11조의2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 물품으로
0. 제17조제4항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원이상
인 물품으로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의 요지 (전문위원 이부상)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92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재물 조사 실시 결과 발생된 문제점 등을 보완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씩 보고하는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서 작성 대상 물품이 너무 많아 관리상 문제점과 예산상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의 중요물품이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변경되고, 불용품매각에 따른 매각 감정 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 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조정되어 불필요한 감정 수수료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 요지	답변 요지
이태홍 위원	재무과장 황경조	'조례 제17조 제4항의 불용품 매각에 있어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 원 이상인 물품에서 개정하여 5백만 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해야 하는데 5백만원 이상으로 감정되는 불용품이 있는지의 사례'	'현재로서는 500만원 이상은 거의 없고, 내구 연수가 지난 청소차량 등이 해당되고 여태 까지도 없었음.'

5. 토론 요지

“ 없음 ”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